

예금보호 확대·中企 기준 완화… ‘가계·기업’ 숨통 틔다

‘생활·경제·행정’ 대개편

하반기 중 예금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네이버 앱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수영장·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35개 정부기관(부, 처, 청, 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소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신탁·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올린다.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된다. 7월 1일부로 채무변제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트레스 금리를 1.5%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이란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0.75%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 교육·국토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대학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양육비 선지급이 7월 1일부로 도입됐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행정 편의의 사항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앱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24와 삼성월렛 2가지 선택에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민간 앱을 통한 발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가 시작됐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공제율 30%)를 받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금융·재정·세제)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 1억원 -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 감안해 일정 수준(3단계:1.5% 적용) 가산금리 부과
(문화·체육·관광)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30%) 시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토·교통)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교통약자 편의 개선 위해 신행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교육·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비양육자에게 회수)
(보건·복지·고용) - 아동 입양절차 민간 → 국가·지자체가 수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만 원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됐다. 이는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 부문은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골자다.

예금·장학금 ‘생활직격’ 혜택 강화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조정 DSR 강화… 신용공급 관리 지속 모바일 신분증 발급 민간앱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 이상 장기유형만 등록 가능)된다. 연립 및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대상으로 이미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월세에 이용자, 저소득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행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 농림·환경

농림·수산·식품 분야 변경사항도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허용되고 근로자 숙소 범위도 확대된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제한도 완화된다. 이는 지난 6월 2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또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부터는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아울러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농림·환경, 산업·국방 전방위 개편 농지 이용완화·재생플라스틱 의무 단통법 폐지·中企 기준도 현실화 병역가산점 축소, 병적관리 강화

8월 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시설은 영업신고만 받던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

는 경우에는 12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업·국방

이달 22일부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 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축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 3000곳, 소기업 566만 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

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국방·병무 부문에서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램·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